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월 하순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28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키로 하였으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저가심의를 거쳐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저가심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이 상향조정되고, 감리원 부당교체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50%로 올리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감리원 교체사유가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1~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를 우선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의계약은 주무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 단체와 물품을 지정하고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 성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물품이나 용역 입찰 때 1단계로 규격이나 기술을 심사하고 해당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